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35 발의연월일: 2022. 8. 19.

발 의 자:김회재·김승남·김승원

김정호 • 민홍철 • 이병훈

전재수 · 정일영 · 주철현

최기상 • 한준호 • 허 영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독사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국가가 고독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 4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 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 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 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 7.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독사위험 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 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 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
	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 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 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 구의 가구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용정보
-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 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 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

 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

 자의 가구정보

- 7.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의 장에게 고독사위험자종합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